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수밀시험 설계반영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

내 용

광주광역시 ○○○○○○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50%를 지원 받아 2014. 7. 14. 광주광역시 서구 ○○로 ○○○(○동)에 있는 (주)○○○○○○○ (대표자 ○○○)와 3개사¹⁾와 ‘○○○교~○○시계간 도로확장공사(2공구)’를 총 공사부기금액 15,743,320,000원²⁾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7. 21. 착공하여 2018. 12. 31.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, 2017. 1. 23.)」 제13장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6절(공사 설계의 변경)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·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, 지질,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, 새로운 기술·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,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.

1) 전라남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로 000 ○○○○건설(주) 대표자 ○○○, 경상북도 ○○군 ○○읍 ○○○길 00-0에 있는 ○○건설(주) 대표자 ○○○, 전라북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○0길 0-0(○동) (유)○○○ ○건설 대표자 ○○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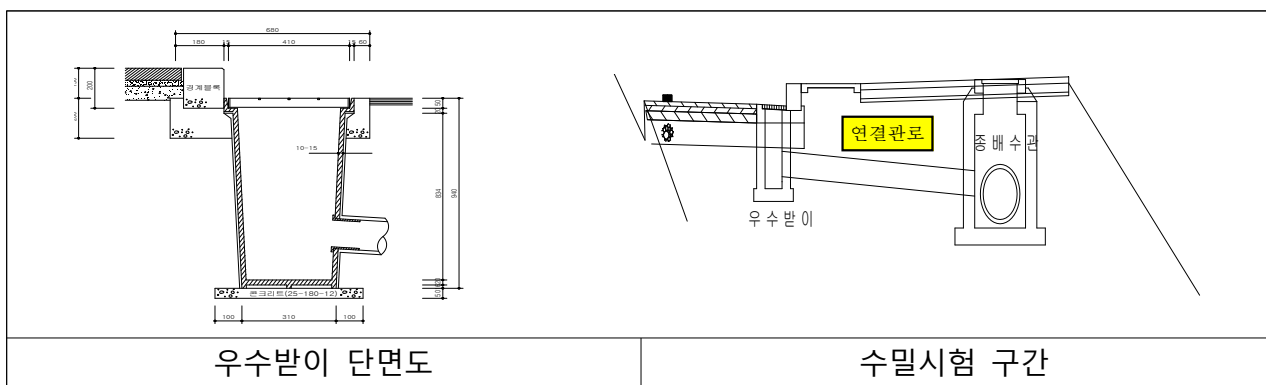
2) 2017. 6. 1. 총 공사부기금액 15,906,163,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

그리고 「하수도시설기준」 1.6.2.(오수관거계획)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관거 부설후 하수관거의 기능에 따라 수밀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.

한편 위 공사구간 4,900m의 도로 양측에는 아래 [그림]과 같이 빗물 등을 배수하기 위한 우수받이와 보도구간 지하의 종배수관을 연결하는 관로가 20m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, 동 공사의 수량산출서에 따르면 우수받이와 종배수관을 연결하는 관로³⁾ 및 종배수관에 대하여 수밀시험을 총 566회⁴⁾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.

따라서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우수받이와 종배수관을 연결하는 관로 및 종배수관은 빗물 등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하수관거 부설 후 실시하는 수밀시험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.

[그림] “우수받이 단면도 및 수밀시험 실시구간”



※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‘○○0교~○○○○간 도로확장공사(2공구)’ 구간 4,900m의 도로 양측에 빗물을 배수하기 위해 우수받이와 종배수관을 연결하는 관로 및 종배수관에 대하여 수밀시험을 총 566회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

3) 연결관로의 길이는 5m 정도임

4) 연결관로 $\Phi 300\text{mm}$ 에 수밀시험 431회, 종배수관 $\Phi 450\text{mm}$, $\Phi 600\text{mm}$, $\Phi 800\text{mm}$ 에 수밀시험 각각 79회, 47회, 9회 실시

하고 있어 수밀시험 실시에 따른 공사비 148,687,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

[시정] 우수관로에 실시예정인 수밀시험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148,687,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